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 가. 발 의 자: 남재경 의원
- 나. 의안번호: 제1238호
- 다. 발의일자: 2016. 5. 31
- 라. 회부일자: 2016. 6. 7

2. 제안 사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옥외행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내용

- 가. 옥외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 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서울시 주최 행사 취소·중단
(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관한 정보)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라. 기 타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민간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중단권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옥외행사를 취소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은 어린이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외수업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하고,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 기관을 통하여 전파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보발령시 시장이 민간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중단 권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옥외행사를 취소·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민간행사에 대한 중단권고, 서울시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취소나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대기오염 예경보제 대상물질로 오존(O₃)을 추가하고 예보의 내용, 기준,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내용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관 계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
|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미세먼지 (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
|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오존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
|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 | | |
|--|----------|---|--|
| | 중대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
|--|----------|---|--|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